# COVID-19 유급 병가



# 고용주

뉴욕의 근로자들은 COVID-19로 인해 **의무적 또는 예방적 격리 명령**을 받는 동안 일자리 보호와 금전적 보상이 보장됩니다.

## 고용주들이 COVID-19 <u>유급 병가</u>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:

직원 수가 10인 이하이고 작년 순이익이 1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직원들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.

- 격리 기간 동안 일자리 보호 및 무급 COVID-19 병가
- 기존 유급 가족 휴가(PFL) 및 장애 혜택(DB)을 통해 나머지 격리 기간에 대해 주당 최대 \$2,884.62까지 보상됩니다.

직원 수가 10인 이하이고 작년 순이익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 직원들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.

- 최소 5일간의 COVID-19 유급 병가 및 격리 기간 동안 일자리 보호
- 기존 유급 가족 휴가(PFL) 및 장애 혜택(DB)을 통해 나머지 격리 기간에 대해 주당 최대 \$2.884.62까지 보상됩니다.

직원 수가 11-99명 사이인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.

- 최소 5일간의 COVID-19 유급 병가 및 격리 기간 동안 일자리 보호
- 기존 유급 가족 휴가(PFL) 및 장애 혜택(DB)을 통해 나머지 격리 기간에 대해 주당 최대 \$2,884.62까지 보상됩니다.

직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.

- 격리 기간 동안 일자리 보호
- · 격리 기간 동안 최소 14일의 COVID-19 유급 병가

공무원인 경우에는(직원 수에 상관 없이)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.

· 격리 기간 동안 최소 14일의 COVID-19 유급 병가

#### 직원의 격리 전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.

- 1. 직원들에게 유급/무급 휴가가 제공됨을 알리십시오.
- 2. 직원들이 PFL 또는 DB를 신청할 때 즉시 도와주십시오.
- 3. 질문이 있다면 844-337-6303으로 전화주십시오.

### 중요 사항:

- 직원이 격리 중이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COVID-19로 인해 폐업한 사업장의 직원은 바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뉴욕의 COVID-19 격리 휴가 혜택은 격리 기간 중에만 제공됩니다. 격리 해제된 후에는 더 이상 뉴욕의 COVID-19 격리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#### 질문:

- 자세한 내용은 paidfamilyleave.ny.gov/COVID19를 방문하십시오.
- COVID-19 유급 병가 상담 전화: 844-337-6303을 이용하십시오.